



한국교통안전공단



수신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이용기관

(경유)

제목 운수업체 일괄 입퇴사 등록 신청 방법 안내

1. 관련근거

- 가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(운수종사자 등의 현황통보)
- 나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(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)
- 다. 행정기본법 제4조(행정의 적극적 추진)
- 라.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

2. 운수회사 양도·양수(회사합병) 시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운수업체 등 입·퇴사등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운수업체 일괄입퇴사 신청방법 안내(배포) 1부. 끝.

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



대리	홍봉환	부장	대결 2025. 2. 6.	처장	전결
			한아람		

협조자

시행 교통안전처-668 (2025. 2. 6.) 접수

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, 한국교통안전공단 (울곡동) / www.kotsa.or.kr

전화번호 054-459-7275 팩스번호 0502-384-5458 / qwer4705@kotsa.or.kr / 비공개(5,6)

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.